보성군의회 공고 제2026 - 14호

보성군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보 성 군 의 회 의 장 보성군의회의장인

1. 제정이유

「소비자기본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홍보관(이른바 떴다방) 등에서 경품·무료 공연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을 고가로 판매하는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모니터링, 피해 예방 교육·홍보, 상담·신고 창구 운영 및 피해구제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나. 방문판매자의 명부 작성・정보제공・청약철회등 의무(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모니터링단・대응팀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안 제5조)

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피해 상담・신고 창구 운영 및 피해구제 권고(안 제7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포상(안 제8조 및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 기간: 2026. 11. 18. ~ 11. 24.(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850-5829)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6,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우 59457)

[붙임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보성군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보성군의회 공고 제2026 - 14호)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붙임2]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소비자가 보성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성군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소비자”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3. “피해”란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로 인해 입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불이익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서, 소비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상담, 피해구제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방문판매업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자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① 군수는 고령소비자의 방문판매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법 방문판매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 방문판매 대응팀(이하 “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단·대응팀 운영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 방문판매의 유형과 피해 사례 소개
2. 피해가 잦은 품목(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에 대한 판매 수법 및 피해 예방 요령

3. 계약서 내용 확인, 청약 철회,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기본 권리

② 군수는 고령소비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피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 등) ① 군수는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해 필요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창구를 통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방문판매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 사례 및 정보 공유
2.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제9조(포상) 군수는 고령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 ⑩ (생략)

참고 **비용 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재정 수반요인:** 해당없음

○ **미첨부 근거규정**

-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미첨부 사유**

-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추계가 어려움.

○ **작성자:**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